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187
----------	------

2024년 11월 2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3명)
나. 제안일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 이유

- 도시미관 상,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필요
- 또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및 개선, 간판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도시 미관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신 설></p> <p><신 설></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p> <p>2.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④ ---- 제3항----- ----- ----- -----.</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나. 검토 내용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따라 시·도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30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수 광고물의 발굴·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지원과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개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됨
-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미관 개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⑥(생략)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조문 정비의 필요성”

- 현재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30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조항에서 개별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1항에서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이

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1항제2호의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은 현행 조례 제30조제2항의 ‘좋은간판 공모전 및 그에 대한 지원’과 목적이 유사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은 현행 조례 제30조제3항의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지원계획’ 수립 후 일부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의무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계획’ 수립까지 시간이 소요되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시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포함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등 통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임

현행 조례	개정안(신설되는 조항)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p> <p>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p>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p> <p>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개정안(신설되는 조항)
<p>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제1차 옥외광고 종합계획(2021~2025)’은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광고 지원, 신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 산업 기반 조성을 중점 과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 질적 향상 등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항목을 보완하여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다만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제2차 옥외광고 종합계획(2026~2030)’ 수립 기한이 곧 도래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향후 제2차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30조에 따라 우수 광고물 발굴을 위한 간판 공모전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그 주요 내용이 현행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그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항목의 정비가 필요함. 다만, ‘지원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원계획’ 수립시 예산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중복 규정 재정비와 통합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옥외광고 종합계획(2021~2025)’이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광고 지원 등 미래지향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일치하도록 향후 지원계획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후 제2차 종합계획(2026~2030) 수립 시기에 맞추어 향후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영철,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도시미관 상,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필요
- 또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 (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 단, 제30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제1항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비용만 추계

[참고] 2024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30조제1항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52,2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30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나. 전제

- 실태조사 비용은 2024년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예산서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30조제2항(실태조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서울시 예산서 활용

4. 덧붙이는 의견 : 실태조사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20,000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30조제2항(실태조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비용은 2024년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

[붙임 1] 2024년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사업설명서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3. ~ 2024.12.
- 지원대상 : 점포주(간판소유자), 광고물제작업자, 서울시자치구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청
- 추진방법 : 공모전 운영 용역계약(수의계약) 체결 후 작품 접수 및 심사,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사업의 주요내용 : 좋은간판, 창작간판 선정 및 시상, 좋은간판 디자인 개발 및 보급